

제314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68호)



2022. 9.

서울특별시의회
봉양순 의원(더불어민주당, 노원3)

□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봉 양 순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지난 2021년 5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에게도 부담하여 관리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□ 그러나, 조례 개정 이후 적절한 보온 조치와 동파안전계량기 설치 등 서울시의 적극행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, 특히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동파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수도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.

- 따라서,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재해로 동파피해를 입은 경우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다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